

개정 개인정보 보호 법령 소개

(1) 2015. 7. 24.자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 하에서도 2014년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같은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히 발생하여 왔는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2015. 7. 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5. 7. 24.자로 공포되었습니다. 해당 개정법(이하 “개정법”)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구제의 강화

가. 법정손해배상제 도입

기존 개인정보보호법하에서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였으나(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소송에서 피해자가 직접 손해의 발생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손해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이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개정법 제39조의2, 시행일 2016. 7. 25.).

이로써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손해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개정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법원이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개정법 제39조 제3항 및 제4항, 시행일 2016. 7. 25.).

이로써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기관과 사업자 등은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여 최대 3배까지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개정법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한 형사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고(개정법 제70조 제2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하는 경우의 벌금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개정법 제73조 제1호),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법 제74조의2).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 강화

개정법의 시행으로 종전 행정자치부가 수행하던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개인정보 분쟁조정 등 일부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되었으며(개정법 제9조, 제40조, 시행일 2016. 7. 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과(개정법 제8조 제4항 및 제5항), 각 부처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법령을 제·개정할 때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평가하여 해당 부처에 개선,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개정법 제8조의2, 시행일 2016. 7. 25.).

개인정보 보호분야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이 대폭 확대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분야에서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맺음말

이와 같이 개정법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손해배상 및 벌칙 등 규제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바, 이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개인정보 보호 법령(정보통신망법 및 신용정보법) 개정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이에 관하여는 다음 호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정법을 통해 법정손해배상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제도가 새로이 시행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소송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인정보처리자인 기관이나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송과 손해배상액 지급을 피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윤종수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040 | E-Mail. jsyoon@shinkim.com |
| ● 정태성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228 | E-Mail. tsjeong@shinkim.com |
| ● 김기욱 변호사 | TEL. 02 316 1765 | E-Mail. gwkim@shinkim.com |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